

의안번호	2214450
의 퇴 인	박정하의원
회 답 일	2025. 12. 2.
추계번호	25C6329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4,000만원, 2030년 1억 5,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9,000만원(연평균 7,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90	—	—	—	—	90	18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안 제6조)	150	—	—	150	—	300	60
합 계	240	—	—	150	—	390	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9조(우수사례의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한복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0조(한복문화의 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의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복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한복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한복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설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1조(전시관 등 설치·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2조(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자에게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3조(한복문화주간)	한복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한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한복문화주간으로 하고, 한복문화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9	안 제14조(한복을 착용한 사람의 우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국립·공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5조(국제교류 및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대학·연구소, 그 밖의 해외기관 또는 단체와의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의 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16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7조(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 디자인·소재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18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자 및 투자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한복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1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안 제6조(실태조사)	○	
3	안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4	안 제9조(우수사례의 발굴 등)		
5	안 제10조(한복문화의 교육 등 지원)		
6	안 제11조(전시관 등 설치·운영 지원)		-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7	안 제12조(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8	안 제13조(한복문화주간)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9	안 제14조(한복을 착용한 사람의 우대)	×	-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10	안 제15조(국제교류 및 협력)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1	안 제16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	-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12	안 제17조(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13	안 제18조(창업 등 지원)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14	안 제19조(조세의 감면)	×	- 감면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조세감면 대상·비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예산)
안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한복마름방 운영 5.4억원
안 제9조(우수사례의 발굴 등)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 5.7억원 (한복 포함 총 5개 분야)
안 제10조(한복문화의 교육 등 지원)	한복전문교육 및 연구 활성화 1억원
안 제12조(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	한복문화 홍보 2.4억원
안 제13조(한복문화주간)	한복문화주간 8억원
안 제15조(국제교류 및 협력)	한복문화 해외교류 4억원 전통문화 해외거점 행사 9억원 (한복 포함 전통문화 종합 문화 행사)
안 제17조(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5.7억원 한류 문화예술인 협업 한복문화상품 개발 6.5억원 전통한복 개발 지원 5.9억원
안 제18조(창업 등 지원)	전통문화 청년 창업육성 지원 32억원 (한복 포함 공예, 한식 등 지원) 한복상품 판로지원 14.6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전시관 등 설치·운영 지원(안 제11조), 한복을 착용한 사람의 우대(안 제14조),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안 제16조), 조세의 감면(안 제19조)은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및 조세의 감면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
-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3]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90	-	-	-	-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안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비용으로 3년마다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
 - 안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제정안 시행 첫 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균관·향교·서원 실태조사”, “한국문학 실태조사” 및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비용으로 2024년도에 각각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4]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한복문화산업 실태조사(안 제6조)	150	-	-	150	-	3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assembly.go.kr